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구제 방안

김 경 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인터넷 공간의 잘못된 기사와 새로운 피해 구제 방안

-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정보법적 접근 -

김 경 환(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I. 언론매체 환경의 변화와 인터넷 기사의 급증

1. 언론매체 환경의 변화

언론매체의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환경의 보급으로 말미암아 언론소비의 형태는 신문·잡지 등과 같은 ‘구독식’의 ‘아날로그 형태’에서 인터넷신문·포털뉴스 등과 같은 ‘전송식’의 ‘디지털 형태’로 바뀌고 있다. 특히 2000년대 말부터 시작된 모바일의 보급은 더더욱 이런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언론매체 환경의 변화는 등록 언론사의 통계로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구분	정기간행물 등록건수
일간신문	363
통신	15
기타일간	353
주간	3,138
월간	4,697
격월간	646
계간	1,408
연2회	506
인터넷신문	4,916
계	16,042

<2013년 정기간행물 등록현황(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인해 2013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4,916종이고, 포털뉴스는 200종에 달한다. 인터넷신문의 등록 수는 일간신문의 13.5배나 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의 증가에는 완화된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도 기여하고 있다. 현행 신문법 시행령상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취재기자 2명 포함)을 상시 고용하고, 주간게재기사 건수의 30% 이상을 자체 생산 기사로 게재하는 요건만 충족하면 인터넷신문사로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매체의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 인터넷신문이나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가 상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제 인터넷신문이나 포털뉴스로 인한 피해구제 신청은 신문·방송보다 4~6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 1월부터 2014년도 7월까지 인터넷언론이나 포털에 대한 언론중재위 피해구제신청은 전체의 64.4%(4,231건 중 2,726건), 1일 평균 4.72건에 달하여, 일간신문의 603건(일 평균 1.05건), 방송의 456건(일 평균 0.79건)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 인터넷 기사의 급증

인터넷신문의 증가로 인하여 인터넷 기사는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신문에 대하여만 다루는 것은 아니고 언론생산자의 형태에 상관없이 인터넷으로 유통되는 기사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현재 일간신문사나 방송사 등 거의 모든 매체들 역시 인터넷 기사를 생산하고 있고, 개별 인터넷신문이 하루에 생산하는 인터넷 기사에 비하여 일간신문사들이나 방송사들이 하루에 생산하는 인터넷 기사의 양은 수백에서 수십배 정도 되기 때문이다.

누가 언론 기사의 생산자인지, 막상 언론 기사가 인터넷 공간에 올라가 디지털

화된 인터넷 기사가 되면 사실상 동일한 성질을 가지게 된다. 즉 디지털 정보와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고유한 특징에 영향을 받게 된다.

디지털 정보의 공학적 의미는 연속적인 실수가 아닌 이산적인 수치로서 표현되는 정보이다. 디지털 정보는 통상 전자기록 형태로 유지된다.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에 비하여 복제가 용이하고 무제한 복제할 수 있으며, 무제한 복제가 된 이후에도 원본과 복제물의 가치나 형태는 변화가 없고, 정보의 저장·편집이나 처리 등이 매우 용이하다.

인터넷의 공학적 의미는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라는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이다. 인터넷은 인류에게 또 하나의 소통 채널이자 전 세계인을 간단한 방법으로 연결시키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정보의 바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에 올린 정보는 짧은 시간에 퍼져나가 거의 같은 시간에 전 세계인이 볼 수 있으며, 나아가 실시간으로 대화와 교류를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은 익명성과 개방성을 전제로 하는바,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순기능을 가진다.

이러한 디지털 정보와 인터넷 공간은 개인과 기업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면서 국가의 경제성장과 기업의 효율성 증대, 국민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류에게 어두운 면을 제공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명예훼손 정보의 파급력 및 영향력 극대화이다.

디지털 정보의 형태를 가진 정보가 인터넷을 만나는 순간, 일단 인터넷의 무지막지한 전파성으로 인해, 한번 올라간 디지털 정보에 대하여는 정보게시자의 제어가 불가능하게 된다. 덕분에 디지털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명예훼손 정보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고통 받는 사람들도

증가한다. 나아가 검색엔진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 공간에 올라간 디지털 정보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검색하여 접할 수 있게 된다. 덕분에 디지털 정보에의 접근성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모두 뛰어넘었지만, 잘못된 정보나 허위 정보·명예훼손 정보 역시 손쉽게 모두에게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잘못된 정보, 허위 정보, 명예훼손 정보에 ‘기사’, ‘언론’이라는 정체성까지 더해지면 그 영향력은 상상 이상이 된다. 단순한 디지털 정보와 달리 기사의 형태를 띤 디지털 정보는 신뢰도가 훨씬 높기 때문이다.

결국, 디지털 정보, 인터넷 공간, 기사라는 세 가지 막대한 영향력의 요소를 모두 가진 결합체인 인터넷 기사는, 그 정보의 내용이 잘못된 정보이거나 허위 정보, 명예훼손 정보일 경우 당사자인 개인의 삶에 매우 큰 타격을 주게 되며, 때문에 그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II.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유형

1.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형식적 분류

인터넷 기사 역시 언론기관에 의하여 생성되었다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에 의한 정정보도청구(제14조), 추후보도청구(제17조)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 다만 이러한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는 전통적인 신문·방송 등을 고려하여 만든 구제수단이라는 점에서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인터넷 기사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다.

예컨대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는 대체로 인식일로부터 3개월 또는 게재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제척기간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짧은 제척기간은 인터넷 기

사에 대하여는 적절하지 않다. 즉 잘못된 인터넷 기사나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는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되는데도, 여전히 오프라인·방송 기사에 대한 구제수단의 기준을 기사를 지속적으로 저장하면서 검색엔진을 통하여 언제든지 손쉽게 표출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도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은 기사의 유효 기간과 관련이 있다. 전통적인 신문·방송 등의 유효 기간을 고려하여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제척기간을 단기간으로 설정하였지만, 인터넷 기사의 유효 기간은 영구적으로 정할 수 있고 인터넷 공간에의 게재 이후 거의 영원히 접근할 수 있기에, 단기 제척기간은 인터넷 기사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구제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태의 피해 유형, 즉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유형 중 기존의 구제수단으로 해결될 수 없는 피해 유형을 형식적으로 분류하여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원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
-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
-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글·링크
- 4) 피해유발 1인 미디어 기사 및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
- 5) 위 4가지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
- 6) 피해유발 신 뉴스미디어 기사(예 : 카카오토픽, 다음 뉴스편당),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 검색결과

여기서 말하는 ‘피해유발 기사’란, 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법원의 기준

에 의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는 기사¹⁾, 나) 허위이지만 작성자가 사실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사, 다) 사실을 적시한 기사, 라) 처음에는 적법했으나 시간·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적절하게 된 기사 중, 가), 나), 라)를 가리킨다.

위와 같은 1)부터 5)까지의 5가지 형태는 전통적인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구제수단으로는 피해구제를 할 수 없다. 따라서 5가지 형태에 대하여 새로운 구제수단이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다만 6) 신 뉴스미디어는 법적 지위나 구제수단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일단 5가지 형태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을 검토한 후 따로 검토하기로 한다.

1) 내지 5) 형태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을 도입함에 있어서는, 먼저 1) 내지 5) 형태의 각 법적 지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모두 인터넷 기사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언론법이 곧바로는 적용되지 않는 영역도 있기 때문이다.

1)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보도가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보도가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데,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므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원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의 법적 지위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원 기사를 퍼 나른 게시글 또는 링크는 언론 기사에 관한 것이지만, 이는 언론이라 할 수 없다. 게시글이나 링크를 만든 사람은 언론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단지 인터넷 정보에 해당하는바 언론법이 아닌 정보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의 법적 지위

이는 언론기관이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언론법에 의하여 규율을 받는다. 다만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새로운 구제수단이 있어야만 피해자의 구제가 가능하다.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의 복제글·링크의 법적 지위

이는 인터넷 정보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언론법이 아닌 정보법에 의한 규율을 받는다.

4) 피해유발 1인 미디어 기사 및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의 법적 지위

1인 미디어란 언론기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기사를 의미하는데, 언론법적으로는 1인 미디어 기사를 언론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인터넷 정보로 취급하여 정보법에 의한 규율을 해야 할 것이다.

5) 위 4가지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의 법적 지위

위 4가지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의 법적 지위는 1) 내지 4)의 결과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예컨대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원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는 인터넷 정보이므로 1)에 대한 검색결과 역시 인터넷 정보로 보아 정보법에 의한 규율을 하는 것이고,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 유발 인터넷 기사』는 언론이므로 2)에 대한 검색결과 역시 언론으로서 언론법에 의한 규율을 하면 된다.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의 복제글·링크』는 인터넷 정보이므로 3)에 대한 검색결과는 인터넷 정보에 해당하고, 『4) 피해유발 1인 미디어 기사 및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 역시 인터넷 정보이므로, 4)에 대한 검색결과도 인터넷 정보에 해당한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원 기사	1) 그 복제글 또는 링크 ⇒ 정보에 해당
	5) 그 검색결과 ⇒ 정보에 해당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기사 ⇒ 언론에 해당	3) 그 복제글 또는 링크 ⇒ 정보에 해당
5) 그 검색결과 ⇒ 언론에 해당	5) 그 검색결과 ⇒ 정보에 해당
4) 피해유발 1인미디어 기사 ⇒ 정보에 해당	4) 그 복제글 또는 링크 ⇒ 정보에 해당
5) 그 검색결과 ⇒ 정보에 해당	5) 그 검색결과 ⇒ 정보에 해당

다만 1), 3) 및 그에 대한 5) 검색결과는 인터넷 정보이기는 하지만, 그 내용은 언론기사이므로 정보법뿐만 아니라 언론법도 함께 고려하여 구제수단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2.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내용적 분류

인터넷 기사를 내용면에서 분류하면, 가) 허위 명예훼손 기사, 나) 허위이지만 작성자가 사실로 믿은 명예훼손 기사, 다) 사실 명예훼손 기사, 라) 시간·상황의 변화로 부적절하게 된 기사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다) 사실 명예훼손 기사는 적법한 기사이므로 구제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가), 나), 라)에 대하여는 구제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가) 허위 명예훼손 기사는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이므로 구제의 필요성이 있으며, 나) 허위이지만 작성자가 사실로 믿은 명예훼손 기사는 사실이 입증됨에 따라 부적절한 기사로 파악될 수 있고, 라) 시간이나 상황의 변화로 부적절하게 된 기사 역시 사후적 관점으로는 부적절한 기사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기사 내지 그 파생글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론의 지위를 가진 경우와 정보의 지위를 가진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각각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구분	가) 고의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나) 사실로 믿고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다)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라) 사후적으로 부적절하게 된 글
언론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	② 부적절한 기사	③ 적절한 기사	④ 부적절하게 된 기사
정보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⑥ 부적절하게 된 정보

결국 인터넷 기사 내지 그 파생글이 언론의 지위를 가진 경우 중 구제수단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가), 나), 라)의 경우에 해당하는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 ② 부적절한 기사, ④ 부적절하게 된 기사의 경우이다.

반면 인터넷 기사 내지 그 파생글이 정보의 지위를 가진 경우는 가), 나), 다), 라)의 경우가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와 ⑥ 부적절하게 된 정보의 두 가지 유형으로만 나뉘는바, 특히 다)의 경우에도 구제수단의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이처럼 언론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와 정보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통신망법이 사실의 적시이든지 허위의 적시이든지 상관없이 명예훼손의 결과를 일으키는 정보는 모두 위법한 명예훼손 게시글로서 불법정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²⁾

하지만 복제글, 링크, 일부 검색결과 등과 같이 정보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인터넷 기사 원본 즉 언론이 투영된 것이므로 언론의 성격을 완전히 지우고 바라보기는 어려운바, 구체적인 구제수단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유형에 대한 형식적 분류와 내용적 분류’를 전제로,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의 새로운 구제수단을 논할 텐데, 이에 앞서 먼저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다만 실무적으로, 사실의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예컨대 언론 기사도 그러한 경우이고, 고객이 올린 업체에 대한 평가글도 그러하다. 후자에 관한 대표적인 판결로서는 산후조리원 판결(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이 있다.

Ⅲ.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

1.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㉔)에 대한 구제수단

가. 불법정보의 개념

인터넷 정보는 적법정보와 불법정보(유해정보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로 나눌 수 있고, 불법정보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에 아래와 같이 개념정의되어 있다.

- 1호.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 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 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 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 5호.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 6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 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 8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 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불법정보의 구제수단은 위와 같은 각 정보의 성질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2호 정보 포함)에 국한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삭제 요청 및 게시중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같은 조 제4항).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직권 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 조치를 할 수 있다(제44조의3 제1항).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 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등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2항).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 요청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제44조의6 제1항).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위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2항, 제3항).

4) 방송통신위원회의 삭제 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같은법 제44조의7 제2항 본문).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단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위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같은법 제44조의7 제4항 본문). 다만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

5)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둔다(같은법 제44조의10 제1항).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을 준용한다(같은 조 제3항).

2. 부적절하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구제수단

한편 인터넷 정보 중 부적절하게 된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부적절하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가 있다.

어차피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정보주체는 국가나 기업이 아닌 개인이고, 국가나 기업은 적극적인 공개적 반박 등을 통해 스스로를 구제할 힘이 있는 반면에 개인은 제도적으로 보장된 구제수단이 없으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점에서,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구제 방안은 개인을 중심으로 살펴봄이 적절할 것이므로,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잊혀질 권리의 기원과 내용 등에 대해 잠시 살펴보기로 한다.

잊혀질 권리의 명시적인 기원은 2012년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제17조이다. EU는 2012년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무제한 확산되고 전파되는 현상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자 잊혀질 권리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아직 EU 각 회원국에서 이를 명문화하지 않아서 실정법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

잊혀질 권리의 개념은 ‘해당 정보가 처리 목적에 비추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가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또는 동의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경우로서 해당 정보의 처리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해당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전파를 방지하도록 요구할 권리(GDPR, 제17조 제1항)’를 의미한다.

Article 17 Right to be forgotten and to erasure

1. The data subject shall have the right to obtain from the controller the erasure of personal data relating to them and the abstention from further dissemination of such data, especially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which are made available by the data subject while he or she was a child, where one of the following grounds applies:
 - (a) the data are no longer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purposes for which they were collected or otherwise processed;
 - (b) the data subject withdraws consent on which the processing is based according to point (a) of Article 6(1), or when the storage period consented to has expired, and where there is no other legal ground for the processing of the data;
 - (c) the data subject object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pursuant to Article 19;
 - (d) the processing of the data does not comply with this Regulation for other reasons.

2. Where the controller referred to in paragraph 1 has made the personal data public, it shall take all reasonable steps, including technical measures, in relation to data for the publication of which the controller is responsible, to inform third parties which are processing such data, that a data subject requests them to erase any links to, or copy or replication of that personal data. Where the controller has authorised a third party publication of personal data, the controller shall be considered responsible for that publication.
3. The controller shall carry out the erasure without delay, except to the extent that the retention of the personal data is necessary:
 - (a) for exercising the right of freedom of express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80³⁾;
 - (b) for reasons of public interest in the area of public health in accordance with Article 81;
 - (c) for historical, statistical and scientific research purpos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3;
 - (d) for compliance with a legal obligation to retain the personal data by Union or Member State law to which the controller is subject; Member State laws shall meet an objective of public interest, respect the essence of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be proportionate to the legitimate aim pursued;
 - (e) in the cases referred to in paragraph 4.

3) Article 80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freedom of expression

1. Member States shall provide for exemptions or derogations from the provisions on the general principles in Chapter II, the rights of the data subject in Chapter III, on controller and processor in Chapter IV, on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to third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sations in Chapter V, the independent supervisory authorities in Chapter VI and on co-operation and consistency in Chapter VII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carried out solely for journalistic purposes or the purpose of artistic or literary expression in order to reconcile the right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with the rules governing freedom of expression.

2. Each Member State shall notify to the Commission those provisions of its law which it has adopted pursuant to paragraph 1 by the date specified in Article 91(2) at the latest and, without delay, any subsequent amendment law or amendment affecting them.

4. Instead of erasure, the controller shall restrict processing of personal data where:
 - (a) their accuracy is contested by the data subject, for a period enabling the controller to verify the accuracy of the data;
 - (b) the controller no longer needs the personal data for the accomplishment of its task but they have to be maintained for purposes of proof;
 - (c) the processing is unlawful and the data subject opposes their erasure and requests the restriction of their use instead;
 - (d) the data subject requests to transmit the personal data into another automated process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2).
5. Personal data referred to in paragraph 4 may, with the exception of storage, only be processed for purposes of proof, or with the data subject's consent, or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nother natural or legal person or for an objective of public interest.
6. Wher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s restricted pursuant to paragraph 4, the controller shall inform the data subject before lifting the restriction on processing.
7. The controller shall implement mechanisms to ensure that the time limits established for the erasure of personal data and/or for a periodic review of the need for the storage of the data are observed.
8. Where the erasure is carried out, the controller shall not otherwise process such personal data.
9. The Commission shall be empowered to adopt delegated acts in accordance with Article 86 for the purpose of further specifying:

- (a) the criteria and requirements for the application of paragraph 1 for specific sectors and in specific data processing situations;
- (b) the conditions for deleting links, copies or replications of personal data from publicly available communication services as referred to in paragraph 2;
- (c) the criteria and conditions for restrict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referred to in paragraph 4.

우리나라 대부분의 글은 한결같이 ‘ 명예훼손적 글’을 잊혀질 권리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잊혀질 권리의 핵심은 불법정보인 명예훼손적 게시글의 삭제가 아니고 ‘적법한 정보’의 삭제이다.

잊혀질 권리의 대상이 되는 적법한 정보는, 예컨대 A가 스스로 올린 게시글이 순식간에 온라인에 퍼지자 놀란 A가 서둘러 삭제를 요구하는 경우, 이혼한 B가 재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B의 이혼 정보가 인터넷에 유포되어 있는 경우, 다른 사람과 결혼한 C의 옛 연인이 연관검색어로 부각되는 경우, 살인죄로 기소된 D가 나중에 무죄선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인자로 표현된 게시글 등과 같은 것들이다.

잊혀질 권리의 필요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첫째, 개인적 관점인데, 의도하지 않은 정보 확산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생성, 유통, 저장 등의 과정에서 정보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수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의미의 권리라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사회적 관점인데, 한 개인의 부정적인 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새로운 출발(clean state)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 개인에게 낙인을 찍는 부정적인 기록, 파산 기록, 전과 기록, 청소년 보호처분 기록 등을 공개적인 공간에서나마 삭제함으로써 한 개인의 새로운 출발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EU의 잊혀질 권리는 몇 차례 변천을 하고 있는데, EU 의회는 2013년 11월 GDPR 원안에 대하여 수정제안을 하였는바, 일단 명칭을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에서 삭제권(right to erasure)으로 개명하였고, 몇 가지 예외사유를 추가하여 권리 범위를 제한하였다. 예컨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정보 보유가 계약 이행에 필수적인 경우·정보 보유가 법에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의 예외 사유를 추가하였다.

2014년 5월경에 있었던 유럽사법재판소의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은 잊혀질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다시 유발하였다. 이 판결은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판결로 소개되고 있는바, 검색엔진인 구글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의 실행을 명령한 판결이다. (자세한 판결 내용은 후술)

이 판결 이후 EU의 작업반(Article 29 Working Party)은 잊혀질 권리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최근 11월 26일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유럽사법재판소의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을 설명한 것인데,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 검색 엔진은 개인정보처리자이다.
2. 개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검색 엔진의 경제적 이익, 검색 엔진을 통하여 링크에 접근할 수 있는 대중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3. 링크 삭제로 인하여 표현의 자유·정보의 자유에 대한 영향은 극소화되어야 한다.
4. 원 소스의 게시글은 삭제되지 않아야 한다.
5. 잊혀질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원래의 웹사이트에 접촉할 의무는 없다.
6. 잊혀질 권리는 EU 회원국의 시민과 거주자의 권리이다.
7. 링크 삭제의 효과는 구글의 .com을 비롯한 관련 도메인에 발생하여야 한다.
8. 대중에게 삭제된 링크가 있음을 공개하여야 한다.
9. 링크 삭제의 기준이나 통계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IV. 인터넷 기사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의 필요성

1. 기존 구제수단의 정리와 그 공백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 유형의 내용적 분류를 고려하여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구제수단을 정리한 표는 아래와 같다.

구분	고의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사실로 믿고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사후적으로 부적절하게 된 글
언론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	② 부적절한 기사	③ 적절한 기사	④ 부적절하게 된 기사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구제 필요 없음	추후보도청구
정보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⑥ 부적절하게 된 정보
	게시중단 요청, 삭제청구			구제수단 없음 (잊혀질 권리 논의 중)

언론의 법적 지위를 가진 글 중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에 대하여는 현재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법원에 의한 삭제청구 등의 구제수단이 존재하고, ② 허위이지만 작성자가 사실로 믿은 명예훼손 기사는 부적절한 기사로서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하며, ④ 시간·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적절하게 된 기사는 추후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정보의 법적 지위를 가진 글의 경우, 위 III.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는 게시중단 요청, 삭제청구, 법원에 의한 삭제청구 등의 구제수단이 존재하고, ⑥ 시간·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적절하게 된 기사에 대하여는 ‘잊혀질 권리’가 고려중이나 아직 입법은 되지 않은 상황이다.

위와 같이 인터넷 기사 내지 그 파생글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이나 정보냐에 따라 서로 다른 구제수단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수많은 공백이 존재한다. 이러한 공백은, 단기 제척기간, 정보이지만 언론에 준하여 처리되어야 할 필요성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발생한다.

예컨대, ‘정보’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에 대하여는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지만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에 대하여는 대부분 단기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기 제척기간이 도과한 기사 등에 대하여는 현재 구제수단이 존재하지 않는바, 별도의 구제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보의 지위를 가지지만 언론의 지위를 가지는 경우와 유사하게 구제수단을 논하여야 하는 것들도 있다.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형식은 정보이지만 그 내용은 언론기관의 인터넷 기사 원본 즉 언론이 투영된 경우가 그러하다. 구체적으로,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글·링크, 5) 위 3)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가 그러하다. 이는 앞서 말한 것처럼 구체적인 구제수단을 검토함에 있어 언론의 성격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처럼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준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언론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수단에서 발생하는 공백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아가 오히려 정보의 지위 때문에 역차별을 받아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1)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의 경우가 그러하다. 이는 사실상 그 내용이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라는 점이 원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인용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의 구제수단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나, 현실적으로는 언론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인용이 그 복제글 또는 링크의 삭제까지는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여 각종 구제수단의 준비 또는 필요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고의로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사실로 믿고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글	사후적으로 부적절하게 된 글
	법적 취급			
	현존하는 구제수단 또는 (부존재시) 구제수단 필요 여부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	①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원본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인용) →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② 부적절한 정보 (원본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 인용) →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③ 적절한 정보	④ 부적절하게 된 정보 (원본기사에 대한 추후보도청구 인용)
	원칙적으로 게시중단 요청, 삭제청구 가능. 현실적으로 거절가능성 있어 구제수단 필요	원칙적으로 게시중단 요청, 삭제청구 가능. 현실적으로 거절가능성 있어 구제수단 필요	구제수단 불요	구제수단 필요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	② 부적절한 기사	③ 적절한 기사	④ 부적절하게 된 기사
	구제수단 필요	구제수단 필요	구제수단 불요	구제수단 필요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글·링크	①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② 부적절한 정보	③ 적절한 정보	④ 부적절하게 된 정보
	구제수단 필요	구제수단 필요	구제수단 불요	구제수단 필요
4) 피해유발 1인 미디어 기사 및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			⑥ 부적절하게 된 정보
	게시중단 요청, 삭제청구			구제수단 필요 (잊혀질 권리 논의 중)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는 ‘정보’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그 콘텐츠의 내용이 ‘언론’인 경우이다. 그런데 특히 원본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 내용이 ⑤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라는 점이 확인된 경우이므로 일반적인 인터넷 정보의 구제수단인 게시중단 요청, 삭제청구 등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원본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청구 인용의 효력이 활용되지 못하고 아예 구제 자체를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별도의 구제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며, 굳이 별도의 구제수단을 논한다면 ‘정보’의 유형 분류에 따르기 보다는 ‘언론’의 유형 분류에 따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만일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가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를 담고 있으면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고,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가 부적절하게 된 정보를 담고 있으면 부적절하게 된 기사에 준하여 처리하면 될 것이다.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거나 사후적으로 부적절하게 된 기사라면,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정보처럼 구제수단을 도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가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를 담고 있으면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에 맞추어 처리하면 될 것이고,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가 부적절하게 된 정보를 담고 있으면 부적절하게 된 기사에 맞추어 처리하면 될 것이다.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 유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글·링크

1)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4) 피해 유발 1인 미디어 기사 및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

1인 미디어 기사는 ‘정보’로 취급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그에 대한 복제글·링크 역시 정보로 취급하면 된다. 따라서 기존의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을 따르면 될 것이며, 굳이 별도로 새로운 구제수단을 논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할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언론기관 소속 기자가 1인 미디어를 운영하는 경우는 언론이나 기사에 준하여 취급함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5) 위 4가지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

위 4가지 유형에 대한 검색결과는 위 4가지 유형의 결론에 맞추어 고려하면 된다. 다만 삭제 의무 등이 발생한 경우, 위 4가지 유형 글의 게시자나 언론기관이 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검색 엔진만 이를 부담하는지, 또는 함께 부담하는지 등의 절차적 문제는 발생할 수 있다.

2. 새로운 구제수단의 필요성

1), 2), 3)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을 논함에 있어, 내용적 분류에 관한 표에서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 ②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 ④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의 3가지로 나누어 고찰하면 될 것이다.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는 불법정보로서 인터넷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정보이고, ②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는 원시적으로 적법정보이나 허위의 정보라는 점에서 불법정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④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는 적법한 정보이나 사후적으로 피해를 유발하는 측면에서 부적절하여 조치가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가.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①)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는 인터넷 공간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이다. 비록 언론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작성된 허위의 기사라면, “허위라는 것을 알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에도 진위를 알아보지 않고 게재한 허위보도에 대하여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는 언론의 자유로서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이다(헌재 1999. 6. 24. 97헌마265 결정). 나아가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는 심대한 인격권 침해 문제를 유발한다.

그러나 이러한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에 대한 구제수단은 부족하다. 제척기간 안에 행할 수 있는 정정보도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짧은 제척기간은 피해자 보호에 충분치 않고 인터넷 기사에 부합하지도 않는다.

2)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는 단기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하고,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나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글·링크는 언론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하다. 법원에 문의하는 사법적 구제가 있지만 이 역시 신속한 처리를 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조치에 의한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다.

1)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된 기사의 복제글 또는 링크나 3)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 기간이 도과한 피해유발 인터넷 기사에 대한 복제글·링크에 대하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구제를 고려할 수 있으나, 언론기사를 내용으로 하고 있기에 실무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관할인지 다툼이 있고, 그 내용이 언론기사인 복제글이나 링크를 과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관할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도 존재한다.

생각건대, ①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구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인터넷 기사의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때문에 언론중재위원회가 제척기간 없이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인터넷 기사는 언론기관에 직접 하면 되지만, 복제글·링크에 대하여는 게시자에 대하여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면 검색 엔진이나 포털에 대하여 하는 것이 타당한지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②)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

최근 대법원은 부적절한 기사에 대한 삭제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즉 대법원은 “명예는 생명, 신체와 함께 매우 중대한 보호법익이고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은 물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타성을 가지는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의 인격적 가치에 관하여 사회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인 명예를 위법하게 침해당한 자는 손해배상(민법 제751조) 또는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민법 제764조)을 구할 수 있는 이외에 인격권으로서 명예권에 기초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도 있다. 한편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청구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지언정 기사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부적절한 기사는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삭제를 할 수 있으며, ‘상당성’의 법리에 의하여 삭제를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언론중재 제도에도 도입하여 피해자가 부적절한 기사에 대하여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②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를 허위정보로 보아 불법정보와 같이 취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언론중재 제도에서는 사후에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에 준하여 다루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생각건대, 첫째, 정정보도청구권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신문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위축되지 않고 신속히 보도함으로써 언론·출판의 자유가 지닌 본래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진실 또한 이에 못지 않은 강한 정의(正義)의 요구이므로 언론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타인의 권리를 계속해서 침해하고 있는 한, 이를 정정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정의에 반한다.”고 판시하여 그 근거를 언론기관의 진실의무로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2006. 6. 29. 선고 2005마165등 결정)인바, 이는 대법원이 판시한 삭제청구권과는 그 법적 근거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나, 정정보도청구권은 삭제청구권과 일맥상통하며, 피해자의 삭제청구권과 언론기관에 대한 삭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진실의무를 부담하는 언론기관의 의무에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공공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방해배제청구권의 근거가 되는 기본권인 인격권은 언론중재위원회가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기본권에 속하고, 셋째, 언론기관이 정정보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언론중재법 제15조 제4항)에 상당성 법리가 열거되어 있지 않으며, 넷째, 인터넷 공간에서 존재하는 허위 정보는 결과론적으로 불법정보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고, 다섯째, 관련 정보가 삭제가 되지 않는 한 언론기관의 주관적인 사정에 상관없이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언론중재 제도에도 도입하고 이를 허위 불법정보에 취급하여, 피해자가 부적절한 기사에 대하여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④)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

처음에는 적법했으나 사후적인 상황 등의 변화로 인하여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는 적법정보이므로 불법정보인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이러한 형태의 기사나 정보가 인터넷 공간에 부존재하여야 하는 당 위성은 피해자의 고통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일 이러한 형태의 기사나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마땅히 구제수단을 고려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 언론에서도 ‘잊혀질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이 필요한지는 언론에서의 ‘잊혀질 권리’와 관련이 있고, 이는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잊혀질 권리’의 인정 필요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디지털과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 인류는 기억에 의존하면서 또는 종이기록에 의존하면서 망각과 싸우고 과거의 사건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많은 기억을 가진 것, 많은 종이기록을 가진 것은 책임과 개선이라는 긍정적 현상을 가져오면서 인류의 역사 발전에 기여했다.

디지털 혁명을 통하여 손쉽게 기록을 만들고 유포할 수 있는 시대, 인터넷이라는 도구와 공간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접촉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의 인류는 이제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기록 때문에 행복해하면서 한편으로는 고민하고 있다. 인류는 더 이상 망각과 싸울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기억이라는 것만 인류의 역사에 기여한 것은 아니다. 망각 역시 인류의 역사에 크게 기여해 왔다. 상처받은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기억에 대하여는 망각하려고 노력했고, 때론 망각으로 인하여 과거의 기억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해왔다.

자연스러운 망각의 과정에서의 기억하려는 노력, 이것이 인류의 인성인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문명을 통하여 이루어진 인터넷은 망각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다. 때문에 디지털 기호로 이루어진 인터넷 공간의 물성(物性)은 인성(人性)과 조화되지 못한 채 인류에게 새로운 도전을 부여하고 있다.

누구나 생성할 수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진보된 검색 엔진을 통하여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망각되지 않은 정보는 인류에게 크나큰 미덕이지만 이러한 미덕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새로운 출발을 막고 있으며, 이러한 미덕으로 인하여 누군가는 오프라인과 다른 온라인상의 정체성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새로운 출발을 꿈꾸지만 인터넷이 발목을 잡고 있고, 과거와 다른 사람이 되었지만 인터넷에서는 여전히 일탈자로 이해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이다. 잊혀질 권리는 2012년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입법으로 혜성과 같이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으며 이러한 이해는 많은 오해와 근거 없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예컨대 잊혀질 권리에 대하여 포퓰리즘의 산물, 권리의 인플레이션, 단순한 이해관계의 문제, 법체계를 무시한 정치적 구호라는 등의 비판과 비아냥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입법이 나오기 이전부터 유럽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의 구글, SNS 등에 대한 데이터 삭제 요청이 끊이지 않았고, 일부는 재판으로까지 이어졌다. 알려진 재판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재판도 적지 않았다.

이렇게 지속적인 사법투쟁의 역사로 인하여 형성된 것이 바로 ‘잊혀질 권리’인 것이다. 즉 ‘잊혀질 권리’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번뜩 만들어진 입법산물이 아니라, 인터넷 정보 시대에서 그 잊혀지지 않는 정보 때문에 고통 받는 소수의 인류가 생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고 있는 권리인 것이다.

이들은 겉으로 봐선 거대 포털, SNS 등과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억만 되고 망각이 되지 않는 디지털 문명·인터넷 공간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인류의 자화상일 수 있다.

이렇듯 잊혀질 권리는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기록에 맞서 자신의 인격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인바, 인터넷 기사도 인터넷 공간에서의 개인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인터넷 기사는 대부분 개인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 기사에서의 잊혀질 권리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결성의 실증적인 증거는, 그 동안 존재하였던 잊혀질 권리에 대한 사례는 대부분 언론 기사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 언론과 잊혀질 권리에 관한 외국의 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들면서 언론기사에 대하여 잊혀질 권리를 어떻게 대입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국 언론에서의 바람직한 잊혀질 권리의 형태에 대하여 절을 바꾸어 설명하기로 한다.

○ 이태리 정치인(Italian politician) 사건 (이탈리아, 2012년)

이 사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적절하게 된 기사에 대한 사례이다. 여기서는 언론기관에 대하여 삭제를 판결할 것이 아니라 정보갱신을 판결한 것이 특이하고, 검색 엔진에 대하여는 삭제를 기각한 것이다.

1993년경,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 지방 출신의 한 정치인(이하 ‘남자’)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곧 무죄 방면됐다. 하지만 그의 체포 뉴스는 이탈리아 언론인 ‘Corriere della Sera’의 뉴스 아카이브(news archive) 때문에 검색결과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위 남자는 이탈리아 데이터보호위원회(Data Protection Commissioner)에 위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밀라노 법원에 ‘Corriere della Sera’는 자신에 관한 기록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무죄방면이 되었으니 ‘Corriere della Sera’에 아직 업데이트 하지 않은 자신에 관한 뉴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만일 이러한 조치가 어려우면 체포 뉴스에 자신의 무죄 방면 뉴스를 링크해 주거나 검색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요청했다. 하지만 이러한 청구도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태도를 취했다. ‘Corriere della Sera’는 아카이브 되어 있는 예전의 체포 뉴스에 업데이트된 뉴스가 같이 링크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판시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공익과 프라이버시·잊혀질 권리라는 사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며, 한 개인의 정체성(identity)에 관한 권리를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이 정확하고 무결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검색엔진은 단순한 매개자일 뿐이므로 위 남자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 (2014년 5월, EU)

이 사건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적절하게 된 기사에 대한 사례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언론기관에 대하여는 삭제를 기각하였지만, 검색 엔진에 대하여는 링크의 삭제를 인용하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마리오 코스테하 곤잘레스라는 스페인 사람이 과거 자신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던 적이 있지만 수년전에 이미 빚을 갚고 집을 찾아왔는데도,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실을 보도한 언론기사가 지금까지도 구글에서 검색됨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해당 언론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를 상대로는 기사 자체의 삭제를, 구글 스페인과 구글 본사를 상대로는 검색결과에 나타나는 링크의 삭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올해 5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최초로 잊혀질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됐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언론사에 대한 잊혀질 권리 행사는 받아들일 수 없고 구글에 대한 잊혀질 권리 행사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바로 이번 판결이다.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의 쟁점은 크게 5가지였다. 첫째, 구글을 개인정보처리자로 볼 수 있는가? 둘째, 미국 기업인 구글에게 유럽연합의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셋째, 검색엔진 운영자에게 링크삭제 의무가 있는가? 넷째, 정보 자체의 게재를 막을 수 있는가? 다섯째, 언제나 링크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가? 이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것은 넷째, 다섯째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검색엔진의 운영자는 제3자에 의해 게재되고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웹사이트의 링크들”을, “그 개인의 이름에 기초하여 행해진 검색으로 표시된 결과목록에서 삭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리고 이러한

삭제 의무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특히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한 삭제요구가 정당한지 여부를 심사해야 하고 그 외에 그러한 검색결과 목록이 그 정보주체에 대해 편견을 불러일으키는지 여부까지 살필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그 웹사이트의 정보 게재 자체는 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정보 게재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이었다. 곤잘레스가 자신의 기사 자체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기사 자체의 삭제를 용인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명예훼손 등이 성립하지 않는 한 표현 자체를 막을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잊혀질 권리의 한계 내지는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보주체의 이러한 잊혀질 권리는 원칙적으로는 검색엔진 운영자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이고 그 정보에 접근하고자 하는 일반공중의 이익에도 우선하는 것이지만, ① 공적인 영역에서 그 정보주체가 수행한 역할에 대한 정보인 경우 ② 그 검색결과 목록을 통해 당해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이 정보주체의 이익보다 압도적인 경우 등의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잊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 공적 영역 기록과 사적 영역 기록의 구별 등을 통해 잊혀질 권리의 적용범위 내지는 한계를 설정하여야 한다는 판시다.

3. 잊혀질 권리에서 정보갱신권으로

	이탈리아 정치인 판결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
관할	이탈리아 대법원	스페인 → 유럽사법재판소
사안	체포 이후 무죄 방면	파산 이후 정상화
언론기관	갱신 의무	의무 없음
검색엔진	의무 없음	링크 삭제 의무
권리 형태	갱신청구권	잊혀질 권리

최근 유럽사법재판소(ECJ)의 마리오 곤잘레스 변호사 판결 이후 국내외적으로 잊혀질 권리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뜨겁다. 변화하는 IT 현상에서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결정권을 강화했다는 차원에서 이 판결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권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고민보다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고 더 많은 법적·기술적 검토와 여론 수렴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IT 환경은 유럽과 다르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환경 역시 유럽과 상이하다. 마리오 곤잘레스 판결에서 볼 수 있는 유럽과 구글의 관계는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예컨대 유럽의 개인정보 당국은 견제의 대상으로 구글을 대했지만,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당국은 우리나라 포털인 네이버나 다음 등을 오직 견제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유럽 사법재판소나 GDPR의 잊혀질 권리를 우리나라에 도입함에 있어 그 이념과 아이디어는 반영하되 그대로 카피해서는 아니 되고 우리 실정에

맞추어 적응시켜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 잊혀질 권리로서 ‘정보갱신권’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미 언급한 이탈리아 정치인 판결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대부분의 잊혀질 권리에 관한 판례는 단지 삭제 여부만을 판단하여 당부를 결정하였지만, 위 이탈리아 대법원 판결은 단순한 삭제가 아닌 업데이트 의무를 부과하면서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조화시키고 있다.

잊혀질 권리라고 하면 오직 정보를 삭제할 권리로 이해되고 있고 또 사실 그것이 정확한 이해이지만, 극단적인 정보의 삭제(erasure)가 아닌 완화된 형태의 정보 업데이트(update)를 기본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여 현 시점에서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하게 하는 권리로 보는 것도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즉 잊혀질 권리는 과거에 정확했고 적법했던 정보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부적절해졌을 때, 삭제의 방법으로 디지털 시대의 망각을 실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현 시점에서의 정확성을 도모해 보자는 것인데, 단순한 삭제 대신 업데이트를 원칙으로 삼게 되면 망각의 지점은 거치지 못하더라도 그 궁극적 목적인 현 시점에서의 정확성 도모는 놓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잊혀질 권리의 가장 큰 비판점인 표현의 자유 침해나 알권리 침해의 문제점이 완전히 해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삭제를 하지 않고 정확한 정보의 변천과정을 밝혀 이를 누구나 볼 수 있다면 표현의 자유나 알권리 침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기록으로서 인터넷의 기능을 그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인터넷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언론의 경우에는 더더욱 부적절하거나 부적절하게 된 기사 등에 대하여 극단적인 삭제를 하는 대신에 완화된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다.

나아가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의 용어는 그 자체로서 법적 권리 용어로 부적합해 보인다. 무엇이든지 다 삭제할 수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다는 점에

서 극단성을 띠고 있으며, 그 본질이 이익형량이라는 객관적인 권리의 성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보갱신권’이란 용어를 쓰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갱신’은 ‘업데이트(update)’의 의미이다. 잊혀질 권리를 단순 삭제가 아닌 업데이트가 원칙인 권리로 이해함으로써 잊혀질 권리의 가장 큰 비판을 극복할 수 있다면, 용어 자체도 잊혀질 권리 대신에 ‘정보갱신권’을 쓰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이 때 업데이트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링크 삽입이 있겠고, 내용 삽입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다. 광의의 의미로는 삭제도 업데이트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유럽의 잊혀질 권리를 그대로 받아들임에 있어 가장 큰 비판점은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비판받는 점이 바로 기존의 명예훼손정보 삭제청구나 정정보도청구 등의 권리와 관계 정립이다.

어떤 경우에 잊혀질 권리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 삭제청구를 사용하며, 어떤 경우에 정정보도청구를 해야 하는지 그 경계가 불명확하여 기존 법체계 안에 짜 맞추어 넣기가 쉽지 않은 것이 유럽의 잊혀질 권리이다.

하지만 잊혀질 권리를 정보갱신권으로 이해하면, 이러한 경계는 명확하게 정립된다. 예컨대 사실과 다른 기사는 정정보도청구로서 해결하고, 사실에 부합하지만 상황이 바뀐 기사는 정보갱신권으로 해결하면 된다. 위법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게시글은 명예훼손 삭제청구로서 해결하고, 적법한 게시글은 정보갱신권으로 해결하면 된다.

즉 잊혀질 권리를 유럽의 잊혀질 권리가 아닌 정보갱신권으로 이해하게 되면, 기존의 우리 법체계에 안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법질서를 침범하지 않고 기본적

인 법질서의 변형을 가져오지 않으면서도 순조롭게 우리 법질서에 포섭시킬 수 있다.

한국형 잊혀질 권리인 ‘정보갱신권’은 오직 업데이트 의무만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삭제함이 타당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삭제의 방법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권리이다.

예컨대 청소년이 무심코 올린 글이나 청소년에 관한 글, 공익과는 전혀 무관하고 매우 사적인 내용의 글 등은 업데이트보다는 삭제의 방법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즉 정보갱신권은 원칙적으로 업데이트 의무를 부과하되, 위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 차원이나 사적 영역 보호 등의 이유에서 삭제 의무를 인정하는 권리이다.

이처럼 잊혀질 권리의 도입은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즉 도입의 당위성은 충분하지만 그 입법이나 권리범위, 실행방법 등은 신중해야 한다.

신중의 이유는 잊혀질 권리의 단점인 표현의 자유·알권리 침해 우려, 기록의 인터넷 기능 소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언론 기사를 사후적으로 부적절해졌다는 이유로 마구 삭제한다면 언론으로서 기능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

개인정보 영역에서의 잊혀질 권리는 한국에서 받아들일 때는 ‘정보갱신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언론 영역에서의 잊혀질 권리는 더더욱 ‘정보갱신권’으로 개선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V. 새로운 구제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1.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부적절한 기사나 정보의 삭제청구

가. 구제 내용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나 부적절한 허위의 글은 기사의 형태이든지 아니면 복제글·링크의 정보 형태이든지 상관없이 인터넷 공간에 존재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나 부적절한 허위의 글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그 글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의 범위는 일부 또는 전부일 수 있다.

나. 관할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나 허위의 글은 그 형태가 기사이든지 아니면 복제글·링크의 정보 형태이든지 상관없이 글의 실질적 내용은 기사이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보다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를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언론중재위원회에 그 글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

인터넷 공간에서의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나 부적절한 허위의 글은 신속하게 삭제되어야 하고 그 글의 삭제에 인터넷 공간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현재 그 글을 보유·관리·이용하고 있는 자라면 언제든지 피청구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언론기관, 검색엔진, 포털 등 상관없이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나 허위의 글을 보유·관리·이용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글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위법한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검색엔진, 포털 등이 직접 임의적인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3), 비록 위법한 명예훼손 글이나 허위의 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형식이 언론기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삭제를 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의 갱신청구

가. 구제 내용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는 원시적으로는 적법한 글이므로 삭제청구보다는 갱신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갱신이라는 것은 업데이트 내용이나 링크를 원 기사에 삽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갱신청구 인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기사에 대한 공중·언론기관의 이익과 피해자의 이익을 이익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갱신청구의 근본이 ‘잊혀질 권리’이고, 잊혀질 권리의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언론기관의 이익과 피해자의 이익의 2가지만을 판단하지 않고, 기사에 대한 공중의 이익까지 같이 고려하여 판단하였다는 점에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나. 관할

갱신시 삽입되는 업데이트 내용이나 링크는 관할 기관에서 정해주어야 하는데, 이 역시 언론기사에 관한 것이기에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한편 언론기사에 개인정보가 담긴 경우,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주무기관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 언론중재위원회와의 중복관할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잊혀질 권리의 도입을 시도하는 정보통신망법에 언론기사에 대한 잊혀질 권리의 관할에 대하여 언급해 주는 것이 좋겠고, 이를 위한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상 협의가 전제되어야 하겠다.

다. 피청구인

위법한 명예훼손 글과 달리 최초 게재 당시에는 적법한 글이었으므로, 검색엔진이나 포털에 대한 청구보다는 게재에 책임이 있는 언론기관이나 게시자를 상대로 갱신청구를 하게끔 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원활한 갱신청구 절차의 운영을 위해서, 게시글을 관리하는 포털은 게시자의 정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문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삭제청구·갱신청구와 기존의 정정보도청구·추후보도청구의 관계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가 인용되면 서로 다른 시점의 2개의 기사가 존재하는 반면, 삭제청구의 인용시에는 인터넷 기사의 부존재, 갱신청구의 인용시에는 1개의 인터넷 기사의 존재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하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따지면 정정보도청구는 삭제청구와 맥을 같이하고, 추후보도청구는 갱신청구와 맥을 같이 한다.

새로운 구체수단인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를 전통적인 정정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오프라인·방송 기사와 인터넷 기사를 나누어 전자에 대하여는 짧은 제척기간의 정정보도청구와 추후보도청구 제도를 운용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제척기간이 없는 삭제청구와 갱신청

구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현재 인터넷 기사에 대하여 짧은 제척기간을 가진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 제도에서는 인터넷 기사를 완전히 제외하고, 인터넷 기사는 오로지 삭제청구와 갱신청구만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4. 인터넷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인터넷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가 문제되는데, 인터넷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역시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반론보도가 인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제글·링크에 반론보도의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경우 인터넷 기사에 대한 ‘갱신청구’ 절차를 준용하여 운용하면 될 것이다.

VI. 신 뉴스미디어 기사에 대한 구제수단

1. 신 뉴스미디어 기사의 법적 취급

최근 다음카카오사는 카카오토픽(Kakao Topic)이라는 모바일앱 뉴스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뉴스펀딩(News Funding)이라는 뉴스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카카오토픽의 경우 다음카카오사는 부가통신사업자이고 카카오토픽은 언론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로서 모바일 앱으로 뉴스를 서비스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그 운영 내용이 네이버 뉴스스탠드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의 ‘인터넷 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다.

한편 뉴스펀딩 서비스는 다음카카오사가 언론기관 기자, 일반인 등과 기사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들이 기자, 일반인 등을 선택하여 기사 작성을 의뢰하면 서 기사 작성비를 임의로 지급하면, 다음카카오사와 기사제공 계약을 체결한 기자, 일반인 등이 기사 작성비로 기사를 작성하여 뉴스펀딩 플랫폼에 올리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토픽보다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지만, 기사 작성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즉 언론기관에 속하는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여 올리면 ‘인터넷신문’으로 보아야 하고, 일반인이 기사를 작성하여 올리면 이는 뉴스펀딩이 카페 서비스와 다를 바 없어 ‘1인 미디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신 뉴스미디어 기사에 대한 규제수단

카카오토픽은 신문법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논의한 인터넷 기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수단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반면 뉴스펀딩의 경우, 언론기관에 속한 기자가 기사를 작성하여 기사를 뉴스펀딩에 올리면 이는 인터넷신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언론중재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 언론중재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고, 지금까지 논의한 인터넷 기사에 대한 새로운 규제수단이 여기에도 적용된다.

반면 일반인이 기사를 작성하여 기사를 뉴스펀딩에 올리면 이는 1인 미디어이므로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Ⅶ. 결 어

기존에 존재하던 정정보도청구나 추후보도청구의 구제수단은 오프라인·방송 기사에 적합하나 상시 존재하면서 언제든지 검색되어지는 인터넷 기사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터넷 기사에 대한 정보법적 접근을 시도해 보았다.

인터넷 기사는 언론적 성격도 있지만 인터넷 공간에서는 정보법의 시각으로도 파악해야 한다. 예컨대 위법한 명예훼손 기사나 정보, 부적절한 기사나 정보는 본질적으로 허위정보이므로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바 이들에 대한 삭제청구를 인정해야 하고, 처음에는 적절했으나 사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부적절하게 된 기사나 정보는 ‘잊혀질 권리’의 법리를 변형한 ‘갱신청구권’을 근거로 하여 업데이트 게시글 또는 링크를 첨부하는 것이 인터넷 기사에 대한 새로운 구제수단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인용문헌]

1. 김경환, [정보보호법바로알기 24] 잊혀질 권리: 인성과 물성의 충돌, 보안뉴스, 2013. 1.
2. 김경환, [정보보호법바로알기 26] 잊혀질 권리 : 전 세계는 소송중!, 보안뉴스, 2013. 2.
3. 김경환, [정보보호법바로알기 30] 잊혀질 권리 : 몇 가지 오해, 보안뉴스, 2013. 3.
4. 최주선, [정보·기술보호법 바로알기 59] ECJ, 최초 ‘잊혀질 권리’ 판결...5대 쟁점은?, 보안뉴스, 2014. 5.
5. 김경환, [정보·기술보호법 바로알기 63] ‘잊혀질 권리’에서 ‘정보갱신권’으로, 보안뉴스, 2014. 9.